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성배,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전시의 대면 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하여 2021. 5. 18.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관련 사항을 조례상 반영하여 변화하는 공연·전시 등의 환경에 대응하고, 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술인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u></p> <p>3. ~ 6. (생   략)</p>	<p>제7조(사업)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예술인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u></p> <p>3. ~ 6. (현행과 같음)</p>